

## ② 개정조문

### □ 지방세법

개정 전	개정 후
제10조의3(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) ① (생략)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<u>거래</u> 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(이하 이 장에서 “부당 행위 계산”이라 한다)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시가인정액</u> 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.	제10조의3(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----- <u>거래(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가인정액(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)</u>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### □ 지방세법 시행령

개정 전	개정 후
제18조의2(부당행위 계산의 유형)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<u>시가인정액보다</u>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.	제18조의2(부당행위 계산의 유형) ----- ----- <u>시가인정액(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보다</u> ----- -----.